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호서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정밀한 응용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학술연구 능력과 뛰어난 지도력을 갖춘 고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본 대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정) ①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연계과정과 통합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각「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13.)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 3. 1)

③ <삭제 2013. 11. 13>

④ 대학원에 외국대학원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공동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공동학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3.1.)

⑤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1)

⑥ 대학원에 국내 다른 대학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연계과정(이하 “대학간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대학간 연계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대학간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3. 8. 28)

제2조의2 (박사학위과정 설치) 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 4항 별표1의2에 따른다. 단,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 2. 21]

제3조 (학과와 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7.09.19, 2010. 3. 1, 2011. 3. 1, 2012. 3. 1, 2013. 3. 1, 2013. 8. 26, 2014. 3. 1, 2015. 1. 26, 2016. 3. 1, 2017. 3. 1, 2017. 9. 1, 2018.10.17, 2019. 2. 26, 2019. 8. 1, 2019.10.28., 2020. 1. 28, 2020. 3. 1., 2022. 2. 8., 2022. 8. 25., 2023. 2. 6., 2023. 8. 28, 2024. 2. 21, 2024. 8. 26)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입학시킬 수 있다. (신설 2010. 3. 1, 2017. 9. 1)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맞춤형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 3. 1, 2018.10.17)

④ 제3항에 따른 계약학과의 명칭·교육과정과 수업·학생선발·학생정원·수업료 및 설치·운영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학과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 9. 1)

제 2 장 입 학

제4조 (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

입학자의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8.10.17)

제5조 (입학자격) ①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법령에 따라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②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법령에 따라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전문개정 2018. 3. 1]

제6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와 달리 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2. 필기시험, 실기시험
3. 구술 및 면접시험

② 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 (편입학) ①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생을 모집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자격, 전형방법, 학점인정,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9. 1)

제8조 (입학제한) 호서대학교의 전임교원은 대학원의 입학을 금한다. 다만, 학문 연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 할 수 있다.(개정 2019. 2. 26)

제9조 (재입학) ① 대학원학생으로서 자퇴한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수업일수, 교과과정, 학점 및 수료

제10조 (수업연한) ① 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 2년 이상
2. 박사과정 : 2년 6개월 이상
3. 연계과정 : 5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
4. 통합과정 : 4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과정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 각각 6개월 이내
2. 연계과정 : 1년 이내
3. 통합과정 : 1년 이내

[전문개정 2018. 3. 1]

제11조 (재학연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연한은 4년, 박사학위과정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9. 1)

제11조의2 (대학원 학기) ① 대학원의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매 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2. 여름학기 : 제1학기 종료 후 3주 이상
3. 제2학기
4. 겨울학기 : 제2학기 종료 후 3주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학원 유연학기제 운영 규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7]

제12조 (수업일수 및 수업) ①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

② 수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팀티칭수업, 프로젝트 연계수업, 집중수업 형태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본 대학교 학칙 제10조에 따른 휴업일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

1. 주간수업
2. 야간수업
3. 계절수업
4.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5. 현장실습 수업
6. 기타 교과운영에 필요한 방법

③ 제2항제1호의 수업을 제외한 다른 방법의 수업운영은 해당과정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3. 1)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수업은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8. 25.)

⑤ 제2항의 집중수업을 실시 할 경우 교과목별로 학점당 15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학원 집중이수제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2. 8. 25.)

제13조 (교과과정의 편성)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의 편성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이수과목)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도 교과과정표에 의하되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으로 한다.

제15조 (석・박사과정의 공동강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사이에 학문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공동강의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 (학사과정자의 대학원 수강) 학사과정재학 중 학업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8)

① 석사과정을 이수할 시 이를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이 학점은 학사과정의 이수학점에는 포함될 수 없다. (신설 2019.10.28)

② 연계과정을 이수할 시 이를 연계과정의 이수학점으로 6학점 이상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학점은 학사과정의 이수학점에는 포함될 수 없다. (신설 2019.10.28)

제17조 (수료학점)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및 실기과목의 학점은 주 2시간씩 한 학기간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②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 통합과정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논문지도 등 학과별로 필요에 따라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3, 2013. 3. 1, 2013. 11. 13)

제18조 (이수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3, 2013. 3. 1, 2018. 3. 1)

1. 보충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2. 박사학위 학생 중 3학기까지 총 취득학점이 27학점 이상이고 총 취득학점의 평점 평균이 4.3 이상인 경우

②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대학원의 설강 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학과교수회의 사정을 거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3. 1, 2017. 9. 1)

③ 삭제 (2018. 3. 1)

제19조 (추가이수 학점) ① 학사 및 석사과정의 전공분야와 다른 전공분야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주임교수는 해당학과 하위 학위과정에서 교과목을 지정하여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 2013. 8. 26, 2018. 10.17)

② 추가이수과목 취득학점은 수료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1)

제20조 (수료) ① 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수료는 재학연한동안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자에게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수료증을 교부 할 수 있다.

제21조 (성적의 평가) ① 학업 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7)

등급	점수	평점	등급	해설
A^+	95 - 100	4.5		
A^0	90 - 94	4.0		
B^+	85 - 89	3.5	I	Incomplete (성적보류)
B^0	80 - 84	3.0	W	Withdraw (수강철회)
C^+	75 - 79	2.5	P	Pass (합격)
C^0	70 - 74	2.0	NP	Non Pass (불합격)
D^+	65 - 69	1.5		
D^0	60 - 64	1.0		
F	이하	0.0		

② 학업성적 I 는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여되며 당해 학기 내 확정 성적을 제출하면 그 성적이 학적부에 기재된다.
(당해 학기 내까지 성적이 평가되지 않으면 I는 F로 간주한다.)

제22조 (학점 인정과 수료성적) 각 과목별 학업성적 등급이 C(평점 2.0)이상이면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은 B(평점 3.0)이상이어야 한다.

제 4 장 학위청구 자격시험

제23조 (종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① 학위청구 자격시험 중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연계과정은 1학기부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3학기부터, 통합과정은 6학기부터 응시자격이 있다. (개정 2012. 3. 1, 2013. 11. 13, 2018. 3. 1, 2019.10.28)

②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석사과정 및 연계과정은 3과목,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4과목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 11. 13, 2019.10.28)

③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 (외국어 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① 연계과정학생은 1학기부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은 2학기부터, 통합과정 학생은 4학기부터 외국어 시험의 응시 자격이 있다. (개정

2013. 11. 13, 2018. 3. 1, 2019.10.28)

②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학위청구논문과 심사

제25조 (논문계획서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소정의 학기 중에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26, 2013. 11. 13, 2018. 3. 1)

1. 석사과정 : 2학기
2. 박사과정 : 2학기
3. 통합과정 : 6학기

② <삭제 2017. 3. 1>

③ 논문계획서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26)

1. 학위논문연구윤리준수확인서
2. 학위논문지도에서의 연구윤리준수확인서
3. <삭제 2017. 3. 1>
4. 연계과정 : 1학기 (신설 2019.10.28)

제25조의2 (학위논문 대체) ①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실기발표, 실적심사 또는 대체학점 이수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6)

② 제1항의 실기발표, 실적심사 또는 대체학점 이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8. 26)

[본조신설 2018. 3. 1]

제26조 (논문작성) ① 논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연계과정은 1학기부터, 석사과정은 2학기 이상,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3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최종논문 파일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에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2013. 11. 13, 2019.10.28., 2023. 2. 6.)

②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논문작성 규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논문제출) ① 논문심사가 완료된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에 업로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5. 1. 26., 개정 2023. 2. 6.)

② 논문심사가 완료된 학위논문은 업로드 후, 제출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6., 개정 2023. 2. 6.)

제28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제출된 학위논문의 심사는 관련분야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행한다.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인 경우에는 3인으로 구성하며, 그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하고,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5인으로 구성하며, 그 5분의 4이상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4. 4. 21)

② 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 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이때, 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 26)

제29조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와 논문제출 자에 대한 구술시험

을 행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한다.

제30조 (재심사) 학위논문이 심사에 불합격될 경우에 학생은 적절한 수정 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논문제출연한) 학위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1년 이내에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 연한에는 휴학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3. 11. 13, 2015. 1. 26, 2017. 9. 1)

제 6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퇴학

제32조 (등록) ① 학생은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5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9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의한 수업연한 단축에 따라 정규등록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 2018. 3. 1)

② 제2조제4항에 따라 학술교류 협정 체결에 의하여 외국대학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교류대학원에서 수학하는 동안 본 대학원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7. 9. 1)

③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9. 1)

제33조 (휴학)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 학기의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2. 「병역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②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 동안은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 수 있으며,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휴학기간은 학위논문제출 연한에 산입하고, 재입학자의 경우에는 재입학 전·후에 휴학기간을 통산한다.

[전문개정 2017. 9. 1]

제34조 (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되었을 경우, 소정기일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일 경우 학기초 4주 이내의 전역예정자에게는 복학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6)

제35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이를 제적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학기개시 30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5.12.23)
2. 매 학기 등록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대학원위원회가 확인하고 징계를 의결한 자.(개정 2015.12.23)

제36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및 지도교수의 연서로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7 장 전공의 변경

제37조 (전과와 전공변경) ① 전과는 동일대학원에 한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9. 3. 1, 개정 2020. 3. 1.)

② 전공변경은 동일학과에 한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3. 1)

③ 학과 및 전공을 변경한자의 기 이수 학점은 변경된 학과나 전공의 교과과정에 맞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변경신청은 1학기 이상 이수 후 등록기간 내에 한다. (개정 2009. 3. 1, 2020. 3. 1.)

④ 대학 또는 모집단위(학과, 전공 포함)가 통합, 개편, 폐지, 신설등으로 인하여 입학 당시와 다르게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수 학기 구분없이 전과 및 전공변경를 허용한다. (신설 2015. 4. 22)

제38조 (변경절차) 학과 및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3. 1, 2024. 8. 26)

1. 전공(학과) 변경원(소정양식)
2. 신 전공지도교수의 승인서
3. 성적 증명서 및 학점인정서

제 8 장 공개강좌, 연구생,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

제39조 (공개강좌) ① 대학원에서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 상 필요한 학식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제목, 과목, 기간, 수강인원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발표한다.

제40조 (연구생) ①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 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의 입학허가는 매 학기초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연구생 과정의 수업기간은 2개 학기 이내로 한다.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별지서식 4)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 3. 1>

제41조 (위탁생) 정부 각 부처에 재직자로서 그 소속장관의 위탁이 있는 자는 위탁생으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42조 (외국인) ① 외국인으로서 제5조의 자격이 있는 자가 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원 외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43조 (수강료) 연구생, 위탁생 및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한다.

제 9 장 장 학 금

제44조 (장학금) ①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0 장 직제와 대학원 위원회

제45조 (직제) 대학원의 직제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46조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대학원 각 학과 또는 전공마다 학사를 담당할 주임교수를 두고, 연구와 논문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개정 2017. 9. 1)

[제목개정 2017. 9. 1]

제47조 (대학원 위원회의 구성) ① 본 대학교에 설치한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③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두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④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운영 절차는 해당 대학원 규정(학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9. 1]

제48조 삭제 (2017. 9. 1)

제49조 삭제 (2017. 9. 1)

제 11 장 학 위 수 여

제50조 (학위수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와 공개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 위원회에서 학위 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총장이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수료 후 논문대체 학점을 이수한 자의 경우도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3. 2. 6.)

③ 학위수여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3. 2. 6.)

제 12 장 준용규정 및 기타

제51조 (준용규칙) 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이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2조 (규칙) 본 학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23)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박사과정 수업연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 중 박사과정에 대한 개정학칙은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박사통합과정 선발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1항 중 통합과정에 대한 개정학칙은 2018학년도 1학기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박사과정 수업연한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학한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통합과정 학생은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문화예술학과 신설에 따른 입학생은 2018학년도 후기 및 여름학기부터 모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설한 간호학과, 안전행정공학과, 해양융합기술학과의 입학생은 2019학년도 전기부터 모집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8.)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8)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8)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변경된 학과의 입학생은 2022학년도 전기부터 모집한다.

부 칙(2022. 8. 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1항의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과 재학생 부터 일괄 적용한다. 단, 재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개정 전 의 학과명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23. 2. 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1항의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과 재학생부터 일괄 적용한다. 단, 재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개정 전의 학과명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23. 8. 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1항의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학간 연계과정 적용례) 대학간 연계과정은 제10조, 제16조,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경우 연계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2024. 2. 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 제1항 별표1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변경된 입학정원은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는 2025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19. 8. 1, 2019.10.28., 2020. 1. 28., 2020. 3. 1. 2022. 2. 8., 2022. 8. 25., 2023. 2. 6., 2023. 8. 28., 2024. 2. 21., 2024. 8. 26)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일반대학원	총 계	184	총 계	142

캠퍼스	계열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및 석·박사통합 과정	
		학과	정원	학과	정원
천안	인문사회	----------	60명	신학과	70명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인재개발학과	
		----------		- 청소년문화상담전공	
		----------		- 유아교육전공	
		----------		- 교육학전공	
		법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디지털기술경영학과		디지털기술경영학과	
		산업심리학과		산업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전공		- 사회복지전공	
		- 노인복지전공		- 노인복지전공	
		한중문화콘텐츠학과		한중문화콘텐츠학과	
		미래산업융복합학과		미래산업융복합학과	
		지속가능경영학과		지속가능경영학과	
		스마트헬스케어경영학과		스마트헬스케어경영학과	
		부동산자산관리학과		----------	
		지역공공경영학과		----------	
		사회복지상담학과		----------	
	예체능	음악학과		----------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학과	
	공학	안전행정공학과		안전행정공학과	
천안캠퍼스		20개 학과	60명	17개 학과	70명
아산	자연과학	수학과	120명	수학과	70명
		응용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	
		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식품생물공학과		식품생물공학과	
		화장품과학과		화장품과학과	
		제약공학과		----------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물리치료학과		----------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	
		바이오응용독성학과		바이오응용독성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	
		바이오융합시스템학과		바이오융합시스템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동물보건복지학과		----------	
	공학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제어공학과		정보제어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	

캠퍼스	계열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및 석·박사통합 과정	
		학과	정원	학과	정원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 기계공학전공		- 기계공학전공	
		- 자동차공학전공		- 자동차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해양융합기술학과		----------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게임학과		게임학과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그린에너지공학과		그린에너지공학과	
		나노융합기술학과(계약학과)		나노융합기술학과(계약학과)	
		에너지기후환경융합기술학과		에너지기후환경융합기술학과	
		수소에너지안전기술공학과		----------	
		나노바이오트로닉스학과		----------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		----------	
		재난안전시스템학과		재난안전시스템학과	
		지능형친환경자동차공학과		지능형친환경자동차공학과	
		AI스마트팩토리 융합공학과		AI스마트팩토리 융합공학과	
		AI콘텐츠융합학과		AI콘텐츠융합학과	
		반도체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중대재해예방학과		중대재해예방학과	
		전자재료공학과		----------	
	예체능	체육학과		체육학과	
		골프학과		골프학과	
		----------		조형융합예술학과	
		애니메이션학과		----------	
		공간디자인학과		----------	
		연극학과		----------	
		스포츠재활트레이닝학과		스포츠재활트레이닝학과	
		시각디자인학과		----------	
	학·연·산 협동과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아산캠퍼스		49개 학과	120명	38개 학과	70명
산학 융합	공학	신소재공학과	4명	신소재공학과	2명
		자동차ICT공학과		자동차ICT공학과	
		로봇자동화공학과		----------	
		융합기술경영학과		----------	
산학융합캠퍼스(당진)		4개 학과	4명	2개 학과	2명

※ 2024학년도 후기 신입학자부터 적용

2018학년도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

1. 석사학위과정

캠퍼스	계 열 별	학 과	입학정원
천안	인문 · 사회계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청소년문화상담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산업심리학과, 테크노경영학과, 디지털기술경영학과, 한중문화콘텐츠학과, 미래산업융복합학과	16 명
	예능계	음악학과	3 명
아산	이 학 계	수학과, 생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생물공학과, 응용통계학과, 화장품과학과, 바이오응용독성학과, 제약공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26 명
	공 학 계	전기공학과, 전자디스플레이공학과(전자공학전공, 디스플레이공학전공),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게임학과, 정보보호학과, 컴퓨터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기계전공, 자동차전공), 건축공학과, 소방방재학과, 토목공학과, 그린에너지공학과, 나노융합기술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92 명
		에너지기후융합기술학과(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과정,3명)	
		수소에너지안전기술공학과(수소에너지안전기술특성화대학원과정, 10명)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학 · 연 · 산 협동과정, 2명)	
		나노바이오트로닉스학과(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과정, 15명)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환경규제및안전전문인력양성대학원과정, 21명)	
	예 · 체능계	공간디자인학과, 연극영상미디어학과, 체육학과, 골프학과, 애니메이션학과, 문화예술학과	4 명
산학융합	공 학 계	신소재공학과, 로봇자동화공학과, 자동차ICT공학과	14 명
아산	공 학 계	나노융합기술학과(계약학과) – 정원 외	
합 계		54 개학과 (학 · 연 · 산 협동과정, 계약학과 제외)	155 명

※ 예 · 체능계열의 경우 천안캠퍼스와 아산캠퍼스 총 정원 7명 범위 내에서 모집

2. 박사학위과정

캠퍼스	계 열 별	학 과	입학정원
천안	인문 · 사회계	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인재개발학과(청소년문화상담전공, 유아교육전공, 교육학전공), 행정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테크노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디지털기술경영학과, 한중문화콘텐츠학과, 산업심리학과, 미래산업융복합학과	47 명
아산	자 연 계 열	생화학과, 수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생물공학과, 화장품과학과, 응용통계학과, 바이오응용독성학과	9 명
	공 학 계	전기공학과, 전자디스플레이공학과(전자공학전공, 디스플레이공학전공),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게임학과, 정보보호학과, 컴퓨터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소방방재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기계전공, 자동차전공), 그린에너지공학과, 나노융합기술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8 명
		에너지기후융합기술학과(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과정, 7명)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학 · 연 · 산 협동과정,2명)	
	예 · 체능계	체육학과, 조형융합예술학과, 문화예술학과	4 명
산학융합	공 학 계	신소재공학과, 자동차ICT공학과	2 명
아산	공 학 계	나노융합기술학과(계약학과) – 정원 외	
합 계		44 개학과 (학 · 연 · 산 협동과정, 계약학과 제외)	80 명

2017학년도 계열별 정원 및 학과(제3조제1항 관련)

1. 석사학위과정

캠퍼스	계 열 별	학 과	입학정원
천안	인문・사회계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전공·노인복지전공), 청소년문화・상담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산업심리학과, 테크노경영학과, 디지털기술경영학과, 한중문화콘텐츠학과, 미래산업융복합학과	16 명
	예능계	음악학과	3 명
아산	이 학 계	수학과, 생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생물공학과, 응용통계학과, 화장품과학과, 바이오응용독성학과, 제약공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26 명
	공 학 계	전기공학과, 전자디스플레이공학과(전자공학전공·디스플레이공학전공),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게임학과, 정보보호학과, 컴퓨터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기계전공·자동차전공), 건축공학과, 소방방재학과, 토목공학과, 그린에너지공학과, 나노융합기술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92 명
		에너지기후융합기술학과(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과정,3명)	
		수소에너지안전기술공학과(수소에너지안전기술특성화대학원과정, 10명)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학・연 협동과정, 2명)	
		나노바이오트로닉스학과(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과정, 15명)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환경규제및안전전문인력양성대학원과정, 21명)	
	예・체능계	공간디자인학과, 연극영상미디어학과, 체육학과, 골프학과, 애니메이션학과	4 명
산학융합	공 학 계	신소재공학과, 로봇자동화공학과, 자동차ICT공학과	14 명
아산	공 학 계	나노융합기술학과(계약학과) - 정원 외	
합 계		51 개학과 (학・연 협동과정, 계약학과 제외)	155 명

2. 박사학위과정

캠퍼스	계 열 별	학 과	입학정원
천안	인문・사회계	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인재개발학과(청소년문화상담전공·유아교육전공·교육학전공), 행정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테크노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전공·노인복지전공), 디지털기술경영학과, 한중문화콘텐츠학과, 산업심리학과, 미래산업융복합학과	47 명
아산	자 연 계 열	생화학과, 수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생물공학과, 화장품과학과, 응용통계학과, 바이오응용독성학과	9 명
	공 학 계	전기공학과, 전자디스플레이공학과(전자공학전공·디스플레이공학전공),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게임학과, 정보보호학과, 컴퓨터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소방방재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기계전공·자동차전공), 그린에너지공학과, 나노융합기술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8 명
		에너지기후융합기술학과(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과정, 7명)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학・연 협동과정,2명)	
	예・체능계	체육학과, 조형융합예술학과	4 명
산학융합	공 학 계	신소재공학과, 자동차ICT공학과	2 명
아산	공 학 계	나노융합기술학과(계약학과) - 정원 외	
합 계		41 개학과 (학・연 협동과정, 계약학과 제외)	80 명

2016학년도 계열별 정원 및 학과

1. 석사학위과정

캠퍼스	계 열 별	학 과	입학정원
천안	인문・사회계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회복지학과, 청소년문화・상담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산업심리학과, 테크노경영학과, 디지털기술경영학과, 한중문화콘텐츠학과	16 명
	예능계	음악학과	3 명
아산	이 학 계	수학과, 생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생물공학과, 응용통계학과, 화장품과학과, 바이오응용독성학과, 제약공학과	26 명
	공 학 계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게임학과, 정보보호학과, 컴퓨터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소방방재학과, 토목공학과, 디스플레이공학과, 그린에너지공학과, 국방과학기술학과, 나노융합기술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06 명
		기후변화융합기술학과(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과정,7명)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학・연 협동과정,2명)	
		나노바이오트로닉스학과(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과정,15명)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환경규제및안전전문인력양성대학원과정, 21명)	
	예・체능계	공간디자인학과, 연극영상미디어학과, 체육학과, 골프학과, 영상예술학과	4 명
아산	공 학 계	나노융합기술학과(계약학과) - 정원 외	
합 계		49 개학과(학・연 협동과정, 계약학과 제외)	155 명

2. 박사학위과정

캠퍼스	계 열 별	학 과	입학정원
천안	인문・사회계	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인재개발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테크노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디지털기술경영학과, 한중문화콘텐츠학과, 산업심리학과	47 명
아산	자 연 계 열	생화학과, 수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생물공학과, 화장품과학과, 응용통계학과, 바이오응용독성학과	9 명
	공 학 계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게임학과, 정보보호학과, 컴퓨터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디스플레이공학과, 그린에너지공학과, 나노융합기술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20 명
		기후변화융합기술학과(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과정,13명)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학・연 협동과정,2명)	
	예・체능계	체육학과, 조형융합예술학과	4 명
아산	공 학 계	나노융합기술학과(계약학과) - 정원 외	
합 계		42 개학과(학・연 협동과정, 계약학과 제외)	80 명

2015학년도 계열별 정원 및 학과

1. 석사학위과정

캠퍼스	계 열 별	학 과	입학정원
천안	인문・사회계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회복지학과, 청소년문화・상담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산업심리학과, 테크노경영학과, 디지털기술경영학과(신설), 한중문화콘텐츠학과(신설)	10 명
	예능계	음악학과	3 명
아산	이 학 계	수학과, 생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생물공학과, 응용통계학과, 화장품과학과, 바이오응용독성학과, 제약공학과(신설)	26 명
	공 학 계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게임학과, 정보보호학과, 컴퓨터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소방방재학과, 토목공학과, 디스플레이공학과, 그린에너지공학과 국방과학기술학과, 나노융합기술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06 명
		기후변화융합기술학과(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과정,7명)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학・연 협동과정,2명)	
		나노바이오트로닉스학과(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과정,15명)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환경규제및안전전문인력양성대학원과정,17명)	
	예・체능계	공간디자인학과, 연극영상미디어학과, 체육학과, 골프학과, 영상예술학과	4 명
아산	공 학 계	나노융합기술학과(계약학과) - 정원 외	
합 계		51 개학과(학・연 협동과정, 계약학과 제외)	149 명

2. 박사학위과정

캠퍼스	계 열 별	학 과	입학정원
천안	인문・사회계	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인재개발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테크노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디지털기술경영학과(신설), 한중문화콘텐츠학과(신설), 산업심리학과(신설)	47 명
아산	자 연 계 열	생화학과, 수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생물공학과, 화장품과학과, 응용통계학과, 바이오응용독성학과	11 명
	공 학 계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게임학과, 정보보호학과, 컴퓨터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디스플레이공학과, 그린에너지공학과, 나노융합기술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28 명
		기후변화융합기술학과(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과정,13명)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학・연 협동과정,2명)	
	예・체능계	체육학과, 조형융합예술학과	4 명
아산	공 학 계	나노융합기술학과(계약학과) - 정원 외	
합 계		44 개학과(학・연 협동과정, 계약학과 제외)	90 명